

보도시점 2024. 2. 8.(목) 조간
2024. 2. 7.(수) 12:00 배포 2024. 2. 7.(수)

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- 아동복지법 개정(2.9.시행)으로 18세가 되기 전
다른 법률상 시설 입소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 -

< 요약본 >

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,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.

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어 18세가 되기 전 「아동복지법」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*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.

* 예 :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생활관,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, 장애인거주시설 등

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「아동복지법」이 개정되어, 법 시행일인 2월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<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자 확대 >

현행	확대
18세 이후 보호종료자만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	18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18세부터 5년간 지원

* 관련 지침(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) : 자립수당, 자립정착금,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, 의료비 지원 사업에 모두 적용

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,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*받을 수 있다.

* 단, 2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

< 상세본 >

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,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.

(1) 추진 배경

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었는데, 이는 아동 연령의 상한*인 18세가 될 때까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가정을 대신하여 자립을 지원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.

* 아동복지법 제3조 :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
그러나 이러한 지원체계에서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 복귀 사유가 아니라 「아동복지법」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*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원가정의 지원도,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.

* 예 : 「청소년복지법」 청소년쉼터, 청소년회복지원시설, 「보호소년법」 청소년자립생활관, 「성폭력방지법」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, 「장애인복지법」 장애인거주시설 등

예를 들어,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 「보호소년법」상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하여 「아동복지법」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.

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18세가 되기 전 보호종료된 사람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「아동복지법」이 개정되어 2월 9일 시행된다.

<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대상자 >

현행	개정(2.9.시행)
(제38조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여야 하며, 자립지원 대상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	
1호. 가정위탁 보호 중인 사람 2호.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호.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연장 후 보호종료된 지 5년 이내의 사람	4호. <u>18세에 달하기 전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(신설)</u>

(2)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

보건복지부는 개정법의 ‘18세 미만 보호종료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’를 구체화하여 사업 지침에 세부 지원 기준을 정하였다. 이에 따라 기존에는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받던 자립수당 등 지원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.

<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자 확대 >

현행	확대
18세 이후 보호종료자만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	18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18세부터 5년간 지원

* 관련 지침(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) : 자립수당, 자립정착금,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, 의료비 지원 사업에 모두 적용

- **(연령기준)** 15세 이후의 연령기준은 ▲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할 경우 아동보호체계에서의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▲경제활동인구(15세~64세)의 기준연령이 15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.
- **(종료사유)** 15세 이후 보호종료자 중에서도 「아동복지법」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취업·대학진학 사유로 종료된 경우 지원한다. 원가정복귀 사유는 원칙적 지원 대상은 아니나,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.
- **(지원시점)**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라도 각종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앞둔 시기인 18세 이후부터 지원한다. 다만, 조기취업·대학진학 사유는 18세 이전에도 지원 가능하다.
- **(적용범위)**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,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. 2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.

보건복지부는 시군구청 자립지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에게는 18세부터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, 법 시행일 전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자립수당 등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.

(3)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현황

보건복지부는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외에도 경제·심리정서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.

- (경제적 지원)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작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, 올해 1월 10만 원을 추가 인상하여 월 50만 원씩 지급받고 있다.
 -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전국 17개 시·도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 원 이상을 지급*하고 있다.
 - * (24년 기준) 서울 2000만 원, 대전·경기·제주 1500만 원, 경남 1200만 원 외 1000만 원
 - 또한,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:2 비율로 정부지원금(월 10만 원 한도)을 매칭*하여 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마련된 개인별 저축액은 18세 이후 자립수당·정착금과 함께 주거비, 학자금 등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.
 - * 아동이 후원, 직접 저축으로 월 5만 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 적립
- (의료비 지원) 지난해 12월에는 의료비 지원도 신설되어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.
- (심리정서 지원) 자립준비청년이 힘들 때 담당 전담인력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17개 시·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규모과 역할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.

< 시·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주요 역할 >

- (사후관리) 전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기적 생활 상담
- (사례관리) 사후관리 중 집중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월 1회 이상 상담과 사례관리비 지원(긴급생활비, 주거 임대료, 심리상담비, 취업지원비 등)
- (기타사업) 자조모임 모집·운영,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,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

- 양질의 상담과 자립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담기관에 배치되는 전담인력을 작년 180명에서 올해 230명*으로 확충하고,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도 작년 2,000명에서 올해 2,750명으로 확대하여 지원된다.
 - * 전담인력(230명) 1인당 자립준비청년(약 1만 명) 43명을 담당하는 수준
- 또한, 전담인력이 우울증 등 정신건강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지역 자립지원전담 기관 -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, 전담인력 대상 정신건강 전문교육*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.
 - * 우울증 척도 활용법, 자살징후 파악, 정신건강 고위험군 상담방법 등 교육('23~)
- 또한, 보호종료 후 전담인력과 연락두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는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담당 전담인력이 아동과 미리 만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자립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.
- (자조모임) 자립준비청년이 상호 교류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자조모임(바람개비서포터즈) 활성화도 지속 추진한다.
 - 기존에 중앙(아동권리보장원)에서 모집·운영하던 것을 2022년부터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지역별로 모집*·운영 중이며, 지난해부터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신설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.
 - * (신규 위촉) '21. 17명 → '22. 62명 → '23. 107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장 발급
- (자립정보 제공) 올해는 공공·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'자립정보 ON' 홈페이지의 기능 고도화도 예정되어있다.
 - 올해 4월부터 회원가입* 기능을 추가하여 맞춤형 자립정보 추천 기능, 온라인 멘토링 등 소통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. 또한 민간 지원기관이 자립정보 ON에서 직접 대상자를 모집·선발하는 기능도 신설된다.
 - * 가입유형 ▲보호아동·자립준비청년 회원, ▲멘토 회원, ▲민간기관 회원으로 구분
 -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적인 고민상담과 나에게 필요한 자립정보를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(☎1855-2455)도 계속 운영된다.

- (민관협력 강화)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IBK 기업은행, 삼성과 각각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사업, 취업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, 올해도 새로운 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해나갈 계획이다.
- 아울러,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. 특히 찾아가는 진로교육,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보호종료 전·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.

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“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다” 라며, “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,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” 라고 밝혔다.

- <참고> 1. 자립수당 사업 개요
 2. 시·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현황
 3.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

담당 부서	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	책임자	과 장	임아람	044-202-3430
		담당자	사무관	이에진	044-202-3443



□ 필요성

-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 경험
 - * 보호종료 후 가장 필요한 지원(중복응답)은 경제적 지원(90.6%), 주거지원(77.3%), 건강지원(47.5%) ('20년,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)
-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 필요

□ 지원내용

- (사업개요)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
- (지원대상) 아동복지시설*,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자
 - *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
 -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(단, '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)
 - 15세 이후 보호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24.2.9.)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
- (법적근거)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의2
- (지원내용)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자립수당 지급
 - (지급금액) '23년 40만 원 → '24년 50만 원

□ 기대효과

-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성공률 제고

참고2

시·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현황 (2024.1월 기준)

시·도	주소	연락처
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,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	02-2226-1524
부산광역시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제로27번길 34, 3층	051-441-7006
대구광역시	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1길 22, 3층	053-243-0090
인천광역시	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601호	032-204-4279
광주광역시	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 62-2, 1층	062-672-1930
대전광역시	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02호	042-242-5726
울산광역시	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241 대공원코오롱파크폴리스 상가 208호	052-265-5636
세종특별자치시	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성로 239	044-867-2056
경기도	(남부)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21 태보빌딩 4층	1566-2714 / 031-346-6994
	(북부)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42번길 31-13, 4층	031-522-6491
강원특별자치도	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와솔길 25, 2층	033-261-2340
충청북도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407호	043-238-5393
충청남도	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, 2층 217호	041-541-6553
전라북도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65, 301호	063-714-3329
전라남도	(순천센터)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길 21, 5층	061-742-4908
	(목포센터)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로41번길 9, 5층	061-282-4908
경상북도	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7, 상가동 306호	054-456-9942
경상남도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45, 현대선앤빌 C동 209호	055-265-7942
제주특별자치도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5	064-759-0846

참고3

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

□ (목적)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자립 초기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

□ (지원대상)

①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

※ 세부 기준은 2024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따름

②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
※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·지역가입자,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

※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

□ (지원기간) 보호종료 후 5년

○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(지원개시일)로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*(지원종료일)

* '지원개시일' 이전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 지원은 불가함

** 15세 이후 보호종료자의 경우 18세 도래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

□ (지원내용) 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본인일부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

요양기관		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					
		일반 건강보험 가입자		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			
전종별 (보건기관, 조산원 제외)	외래	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~60%		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%			
	입원	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%		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%			
약국· 한국회귀·필수 의약품센터		처방 조제	요양급여비용의 30%		처방 조제	요양급여비용의 14%	
		직접 조제	4,000원 초과	요양급여비용의 40%		직접 조제	4,000원 초과
	4,000원 이하	1알 1,400원 2알 1,600원 3일 이상 2,000원		4,000원 이하	면제		